

2017년 민방위 비상대피 계획

I 목 적

- 민방공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읍·면 단위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 - 읍·면 소재지 이외 자연부락(里 단위)은 대피대상에서 제외
- 「민방위기본법」 및 「민방위시설장비 운영매뉴얼」에 명시된 시설지정 및 관리사항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표준화된 주민대피 계획 수립

II 법적근거

□ 민방위기본법 제14조

- 민방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

□ 민방위시설장비 운영매뉴얼(비상대피계획 수립)

- 매년 비상대피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

< 관련법령 >

- 민방위기본법 제14조(시·군·구 계획)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시·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업무에 관한 시·군·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·군·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,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민방위기본법 제15조(민방위 준비 명령)
 - 중앙관서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.
 1.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등

Ⅲ

비상대피계획

□ 기본현황

(2017. 01. 03.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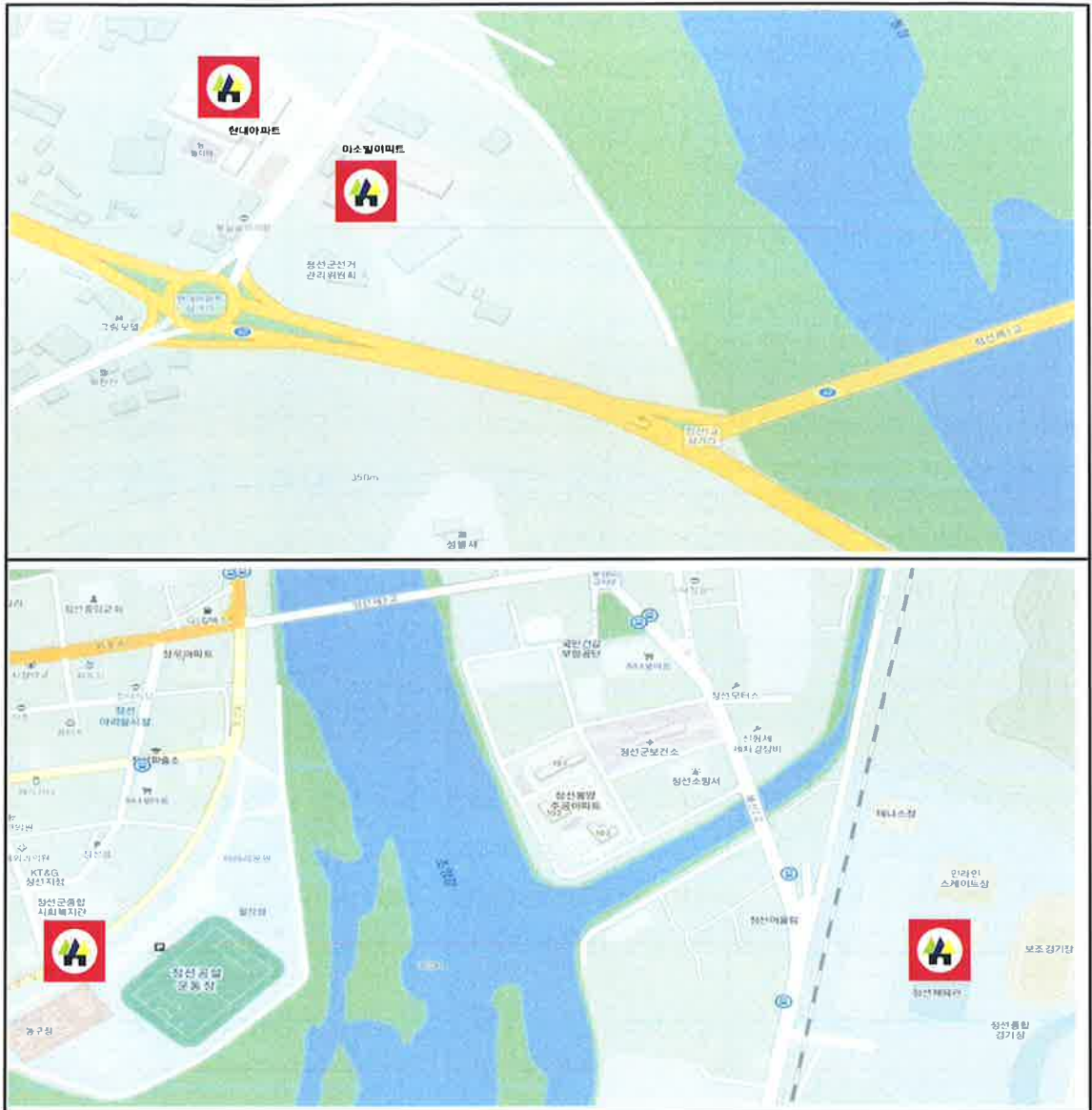
인구	소요량	확보량			정부지원		자치단체		공공용지정	
		개소	m ²	확보율	개소	m ²	개소	m ²	개소	m ²
11,277	9,304	8	5,127	55%	-	-	2	194	6	4,933

※ 대피 소요량 기준 : 4명당 3.3m²(10시간이내 대피 시)

□ 대피구역도 및 비상연락망 현황

○ 대피 구역도





○ 비상연락망

유관기관	전화번호	비 고
정선군청	033-562-3911	
정선경찰서	033-560-5257	
정선소방서	033-563-0119	
육군제8087부대	033-562-0113	
정선읍사무소	033-560-2768	
정선보건소	033-560-2726	

□ 시설현황 및 운영 책임자/대피유도요원 지정

시 설 현 황					운 영 책 임 자		대 피 유 도 요 원	
시설 번호	시 설 명	시설구분	규모 대피가능인원	위 치	소 속	직 위 (연락처)	소 속	성 명
1	정선군청	자치단체	111 135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청	자치행정과장 (560-2210)	자치행정과	장선웅
2	종합사회복지관	공공용	429 520	정선읍 봉양7길 16	종합사회복지관	총무팀장 (562-2922)	종합사회복지관	전새탁
3	실내체육관	공공용	754 915	정선읍 애산로 60	시설관리공단	경영혁신팀장 (560-2579)	시설관리공단	김응경
4	정선읍사무소	자치단체	83 101	정선읍 봉양리 210-1	정선군청	정선읍장 (560-2600)	정선읍사무소	장성철
5	정선교육지원청	공공용	77 93	정선읍 봉양리 400-1	정선교육지원청	교육장 (560-8114)	정선교육지원청	최원규
6	KT정선지점	공공용	154 187	정선읍 봉양리 263	KT정선지점	지점장 (563-2200)	KT정선지점	김형상
7	현대아파트	공공용	3,374 4,090	정선읍 북실리 745	현대아파트	관리소장 (562-8515)	현대아파트	관리과장
8	미소빌아파트	공공용	145 176	정선읍 북실리 746	미소빌아파트	관리소장 (563-3799)	미소빌아파트	관리과장

□ 상황별 조치사항

상 황	조 치 사 항
민방공경보 발령	대피시설 개방, 대피유도요원 배치
주민 대피	↓ 주민 대피유도, 시설 출입통제
민방공 상황	↓ 방송청취(스피커, 라디오 ON)
경계 경보	↓ 대피시설 개방, 경계활동
상황 종료	↓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

- 운영 책임자는 민방공경보 발령 시 즉각 시설개방이 가능한 자 (시설주, 시설관리자 등)를 지정
- 대피유도요원은 대피시설에 가장 인접한 직장 또는 지역민방위대 유도통제 분대원 등 지정

○ 시설운영 책임자의 역할 및 임무

- 민방위 준비명령 발급 시 비상대피시설 운영 준비
(대피공간 확보, 안내판 부착, 방송시설 · 비상물자 준비 등)
- 민방공경보 발령 시 시설 개방
- 민방공 공습간 시설 출입통제
- 화생방상황 또는 경보해제 등 확인을 위한 준비 및 조치
- 상황 종료후 시설 피해보고(정선군 상황실)

□ 주민홍보

-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홈페이지 게시
- 민방위의 날 훈련 전 반상회보를 통한 주민 홍보
-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통로별 게시판 활용 홍보
 - ※ 군 홈페이지, 반상회보, 게시판 등 홍보문안 작성
- 민방위대원 및 공무원 대상 비상대피계획 교육 및 홍보
- 이장 및 각 민방위대장에게 비상대피계획 배부 및 홍보
- 공공용 지정시설 건물주 및 시설관리자에게 비상대피계획 배부 및 입주민 홍보
- 관내 소방서, 경찰서 등 유관기관 등에 계획 배부
- 대피소 식별 가능토록 안내 및 유도표지판 적정위치 부착

비상시 대피소 찾아보기

정부는 적 포격, 공습 등을 대비하여 전국적으로
2만4천여개의 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런곳이 비상시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



지하철역, 지하주차장, 대형건물 지하실 등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지하시설

스마트폰 앱 '안전디딤돌'로 비상시 대피소를 찾아보세요

- (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'안전디딤돌' 검색) 앱 설치
- 앱 초기화면에서 ①민방공대피소 → ②현재 위치조회



※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(www.safekorea.go.kr)에서도 확인 가능

사전에 '발'로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

-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최대한 대피시간이 짧은 대피소 찾기
- 대피 이동경로에 대형유리, 간판 등 위험요인이 있는지 사전 확인
- 어린이에게는 대피소 약도를 만들어 주고 주기적으로 교육

민방위[훈련] 유도요원 행동 매뉴얼

단 계 별	행 동 매 뉴 얼
훈 련 전 준비사항	○ 민방위 복장(민방위복, 모자, 완장) 착용 ○ 대피유도 장비(호루라기, 메가폰, 교통신호봉 등) 준비 ○ 임무숙지, 유도구간 위치 ○ 훈련시작 10분전(13:50)까지 지정장소 위치
공습경보 발 령 (14:00~14:15) 3분 파상음	○ 재난위험경보 발령즉시 주변 주민에게 경보내용 전파 ○ 이동주민 인근대피소로 대피 유도 ○ 차량은 도로 우측 정차 후 대피 유도 ○ 1차선은 비상차로로 반드시 확보 ○ 차량은 최대한 도로 우측으로 대피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여건, 교통량을 감안하여 최소한 복열정차 ○ 하차대피가 어려운 경우 차내에서 라디오 청취 계도
종료방송	○ 훈련종료 발령즉시 주변 주민에게 내용 전파 ○ 대피주민에게 통행이나 보행 유도 ○ 정차중인 차량은 정상 운행하도록 유도
해 제	○ 훈련 지원장비(모자, 완장 등) 반납 ○ 대피 유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작성